

유네스코 목록 등재관련

지적재산권 문제—인도네시아 사례

가우라 만차차리타디푸라

인도네시아 크리스사무국 차장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일반의 의식을 제고하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문화표현물, 민간전승물, 전통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지난 10년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뜨거운 화제였다. 본 논의는 오래전에 창조되어 그 무형문화유산의 창작자(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거나,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에 의해 연행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무형문화유산의 소유권은 무형문화유산보다 법적으로 쉽게 정의된다. 예를 들어, 자연유적지 또는 문화유적지, 물질적인 유물의 소유권은 기존의 법제도를 이용하여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항상 변화하고 재창조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유지되는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유지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개발권 및 소유권을 처분할 권리를 내포하는 서양의 ‘소유권’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책임 *custodianship*과 관련해서는 ‘관리 *stewardship*’의 개념이 ‘소유 *ownership*’의 개념보다 더 적절할 수 있다. 무형문화와 관련해서 ‘문화적 자산’이라는 용어는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거의 대체되었다.

필자는 지적재산권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지식이나 권한이 없다. 이 주제는 학식있는 다른 발표자가 다룰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인도네시아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무형문화유산이 전통에 기반한 지적 창조의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최종안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전권을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 협약문을 조율한 사람들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협약의 규정이 기존 또는 앞으로의 어떠한 법적 수단과도 중복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유의하였다.¹⁾ 그러나 협약문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1.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전통 규칙의 존중

특히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이라고 분류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언급되고 규정되었다.

라. 다음을 목표로 하는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마련한다.

- (2)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양상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여 왔던 관행을 존중하면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을 제공²⁾

상기 조항은 2003년 협약에 의해 확정된 세 가지 목록에 대한 등재신청서에 반영되어 있다.³⁾ 필자는 이에 대한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앙클롱 바훈 *Angklung Babun*은 인도네시아 반텐 *Banten*주 카네케스 *Kanekes* 마을 주민이 연주하는 대나무로 만든 전통 악기이다. 이 마을의 전통법에 의하면 외부인은 카네케스 마을에 들어

1_ Blake, Janet, Commentary on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titute of Art and Law, 2006, Leicester, p.42

2_ 유네스코 2003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3조

3_ 유네스코 2003 협약 사무국, 양식 ICH-02, 5항 c. 및 양식 ICH-0의 관련 항목 ICH-03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앙클룽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절차로서 앙클룽 바훈을 녹음하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바두이족 *Baduy*을 인터뷰하기 위하여, 필자가 소속된 추천연구단은 마을 사람들을 외부로 초청하였고 주민들로부터 앙클룽 바훈을 녹음하고 그들을 인터뷰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⁴⁾



인도네시아 반텐(Banten)주 카네케스(Kanekes) 마을주민이 연주하는 앙클룽 부훈(Angklung Buhun) / 가우라 만카카리타디푸라 촬영
©2009 인도네시아 문화연구개발원

II. 등재양식(Form ICH-07) 내용

이 양식은 2003년 협약에 의해 확정된 세 가지 목록에 대한 등재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부속문서이다.⁵⁾ 이 양식의 제목은:

Cession of Rights and Register of Documentation Submitted as Part of a Nomination File fo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or Representative List

유네스코 긴급보호목록과 대표목록
등재신청서의 일부로써 제출된 권리양도 동의서 및 제출문서 목록

이 양식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등재신청서의 일부로써 사진과 시청각자료를 포함한다. 등재신청서에 기입된 내용은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될 때까지 유네스코 비밀서류를 취급하는 기존 규칙을 적용받으며, 등재 이후에는 일반에 공개되고 유네스코 웹 사이트에 수록된다.

4_ 인도네시아의 앙클룽을 2009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추천서류 인도네시아 공화국복지부 정리.

5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무국, 양식 ICH-01, ICH-02 및 ICH-03.

양식 ICH-07의 관련부분은 아래와 같다:

**ICH-07양식
권리양도 동의서 및 제출문서 목록**

추천된 유산의 명칭: _____

제출 국가(단체): _____

1. 본인은 (성명 기입), _____, 이 문서로 유네스코에 언어와 전자문서를 포함한 양식에 제한 없이 다음의 자료(전체 또는 부분으로서)의 사용, 출판, 재생산, 배포, 전시, 소통 및 일반 공개에 대한 비배타적인 권리를 양도합니다. 본인이 유네스코에 양도한 권리는 철회할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전세계에서 유효합니다.

사진(필요한 만큼 표의 줄을 늘릴 것)

| 식별기호 | 제목 또는 간단한 설명 | 일자 | 촬영자 | 저작권 정보 : ©[연도] 이름 _____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청각자료(필요한 만큼 표의 줄을 늘릴 것)

| 식별기호 | 제목 또는 간단한 설명 | 일자 | 촬영자 | 저작권 정보 : ©[연도] 이름 _____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또한 본인은 유네스코에 비상업적 교육 또는 공공정보를 위한 용도를 위하여 제 3자에게 자료의 전체 또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재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합니다.

3. 이러한 권리는 자료가 사용될 때에 위에 언급된 크레딧이나 이와 동등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조건하에 양도됩니다.
4. 본인은 이 동의서의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권한 일체를 양도할 자격이 있으며 자료들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 a) 기존의 저작권 또는 특허를 어떤 방식으로든 위반하거나 침해하지 않고
 - b) 묘사되거나 구체화된 유산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어떠한 관습을 침해하지 않고, 외설적이거나 비방,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일자 : _____

성명 : _____

주소 : _____

서명 : _____

(유네스코에 대한 양도각서 원본에 서명을 한 후, 2부는 유네스코에 반송하고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하십시오)⁶⁾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상기 양식에 서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유네스코는 사용, 출판, 재생산, 배포, 전시, 소통 및 일반 공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ICH-07 양식을 단순히 작성하고 기재해왔다. 그러나 한 인도네시아의 법률전문가는 ICH-07 양식에 포함된 "철회할 수 없는"과 "영구적으로" 라는 단어와 문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지적재산권 또는 저작권은 보통 영구히 주어지기 보다는 일정기간에 한해 부여된다.⁷⁾ 이 양식은 유네스코에게만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자료의 제작자와 저작권의 소유자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6_ 양식 ICH-07,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무국

7_ Basuki Antariksa, 인도네시아 공화국 문화관광부 공무원

3. 등재신청서에 대한 공동체의 ‘자유의사에 기반하고 사전에 통보된 동의’에 대한 요구

공동체의 참여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또 다른 요구사항은 등재신청서에는 반드시 ‘자유의사에 기반하고 사전에 통보된 동의’에 대한 문서나 다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다.⁸⁾ 이를 위하여 인도네시아는 우선 인도네시아어로 된 등재신청서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시하였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개 국어로 작성된 자유의사에 기반하고 설명이 주어진 사전동의서에 자유롭게 서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그러한 양식의 견본은 이 발표문에 첨부되어 있다.

4. 무형문화유산 목록관리상의 지적재산권 존중

지적재산권이 고려되어야 할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다른 분야는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이다.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시, 특히 사진과 시청각 자료를 포함하고 이 정보가 웹사이트와 같은 공공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는 최근에 시행한 “인도네시아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Invento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Indonesia*” 사업에서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예상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각각의 문화유산 항목을 목록에 기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자료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그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에 반대할 확률도 존재한다. 이는 ‘신성한 비밀 지식’이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목록 자체는 존재하지만 목록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는 2003년 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특정부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규정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⁹⁾

8_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사무국.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추천을 위한 양식 ICH-02, 5항.b 및 긴급한 보호 양식 ICH-0, 우수사례목록 양식 ICH-03관련 항

9_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3조, (d) ii, 양식 ICH-02 5항 c), 양식 ICH-01 및 ICH-03의 관련 항.

5. 목록에 대한 (a) 공동체/조직/협회/기관, (b) 사회단체 또는 (c) 개인과의 동의

참고 :

공동체/사회단체/개인들과 동의 하에 신성한 지식과 기술(비전해운)을 포함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유산 역시 인도네시아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다.¹⁰⁾

요약하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서 담당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정의하거나 정립하는 것보다는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부분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위의 4가지 예시에서 보듯이 2003년 협약은 그 시행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10_ 인도네시아 문화관광부 및 유네스코 자카르타 지부, 상계서, 목록 양식 및 제3장.